내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(조특법§63) 중소기업과 동일 -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(4년)간 100%, 그후 3년(2년)간 50% \* 공장이 없는 경우 §63의2(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) 적용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(조특법§63의2) 중소기업과 동일 -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(4년)간 100%, 그 후 3년(2년)간 50% \* 소비성서비스업, 부동산임대･중개･매매업, 건설업 등은 제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§64) -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의 4년간 법인세 50% 감면 - 좌동 -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%감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(조특법§85의8) 해당없음 -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§99의9) - 중견･대기업은 다음 한도 : 투자누계액 50%＋상시근로자수 ×1,500만원(청년 등 2,000만원) - 5년간 100% 감면, 그 이후 2년간 50% 감면 -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 최저한세 (조특법§132) ①･②중 큰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×최저한세율 - 좌동 \*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구 분 과세표준 ’10년 ’11∼’12년 ’13년 ’14년∼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% 7% 7% 7%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∼3년차 - 8% 8% 8% 유예기간 이후 4∼5년차 - 9% 9% 9% 100억 이하 10% 10% 10% 10% 1천억 이하 11% 12% 12% 1천억 초과 14% 14% 16% 17%